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연월일 | 2021. . .<br>(제 회) |      |

##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| 국무위원 문성혁<br>(해양수산부장관) |
| 제출연월일 | 2021. . .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# 1. 의결주문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해어선원의 합병증 예방 등 후유증상 진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이 개정(법률 제18290호, 2021. 6. 15. 공포, 12. 16. 시행)됨에 따라 장해어선원 중 예방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지정하고, 진찰 및 검사 등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지원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객관적인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위법령을 준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재해어선원 및 유가족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해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금지 금액을 전액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##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) ①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(이하 "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"라 한다)는 중앙회가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한다.

② 중앙회는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에게 지정의료기관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비용의 산정기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른다.

1. 진찰 및 검사
2. 약제 또는 진료재료의 처방
3. 수술을 제외한 처치, 그 밖의 치료

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급여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.</p> <p>1. 진찰 및 검사</p> <p>2. 약제 또는 진료재료의 처방</p> <p>3. 수술을 제외한 처치, 그 밖의 치료</p> <p>4. 재활치료</p> <p>5. 입원</p> <p>6.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</p> <p>③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기준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인정 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.</p> |
| 제26조의3(수급권의 보호) 법 제34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| 제26조의3(수급권의 보호) -----<br>----- 법3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요양급여, 장례비, 행방불명급여 및 소지품 유실급여: 해당 보험급여 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상병급여: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장해급여,일시보상급여 및 유족급여: 해당 보험급여의 3분2에 해당하는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해약환급금: 「민사집행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| (044) 200 - 5468 |